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0 - 11

제안연월일 : 2000. 4. .
제안자 : 거창군수

개정이유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골자

- 별정직 읍·면장 폐지에 따른 별정직 관련문구 개정
- 근무상한 연령 단서조항 신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근거

- 경상남도 총무 12100 ~ 737 ('99.11.20)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표준안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무원중 읍장·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중 “단위기관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u>공무원중 읍장·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u> (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p> <p>①~② (생략)</p>	<p>제2조(적용범위) ①<u>지방별정직공무원</u>..... </p> <p>①~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u>단위기관내에서 전보</u>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조 (전보) <u>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u>..... </p>
<p>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다. <단서 신설></p> <p>② (생략)</p>	<p>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u>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u> <u>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